

#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997년 5월  
기획총무위원회

##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및제안자 : 1997년 5월 6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7년 5월 7일
- 다. 상정일자 : 제66회 서구의회(임사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1997년 5월 21일 상정의결)

## 2. 제 안 설 명 의 요 지

<제안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 가. 제안사유

- 광주광역시의 2단계 조직개편계획에 의거 차량등록업무, 건설기계(중기)관리업무등이 자치구로 이관

### 나. 주요골자

- 지방세과의 분장사무에 “자동차등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부과징수” 신설 (제6조제4항제9호)
- 지역교통과 분장사무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제8조제2항제10호)
- 건설과 분장사무에 “건설기계(중기)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제8조제3항제12호)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박종근 )

-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 3 시 2단계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를 연관부서에 분장하기 위한 것으로
- 자동차등록관련 업무가 그동안 외곽지에 사무소가 위치하여 교통유발 및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었으나 연관사무의 일환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증대하고 민원처리시간 단축과 자치구의 재정력을 증가한다는 측면이 있으며
- 보건소의 한방의료실 운영은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부과징수

제8조제2항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중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건설기계(중기) 등록에 관한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총무국) ① ~ ③ (생략)                      ④ 지방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8 (생략)  <span style="float: right;">(신 설)</span></p> <p>제8조(도시국) ① (생략)                      ② 지역교통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9. (생략)  <span style="float: right;">(신 설)</span></p> <p>③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11. (생략)  <span style="float: right;">(신 설)</span></p>	<p>제6조(총무국)①~③(현행과같음)                      ④ -----                      -----                      1. ~ 8. (현행과 같음)                      9.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부과징수</p> <p>제8조(도시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9. (현행과 같음)                      10. <u>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u></p> <p>③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건설기계(중기) 등록에 관한 사항</u></p>